

#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4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2. .  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최근 물가 상승과 외식비 인상 등으로 급식비 지급기준을 지방공무원 급식비 기준단가에 연동하도록 개정함으로써, 급식비 기준의 현실화와 향후 물가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항목 중 급식비 지급기준을 현행 “8,000원 이내” 에서 “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별표2의2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이내” 로 변경

## 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 없음

## 5. 예산수반 사항: 해당 없음

## 6. 관계법령 발췌서: 해당 없음

## 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 기간: 2026. 1. 27.~2026. 2. 19.(23일간)

나. 의견 내용: 의견 없음

## **8. 부서협의 결과**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 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개선의견 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개선권고(수정 반영)

“부패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공무원 급식비 기준단가의 출처를 조례에 명시하여 반영함.”

## **9. 참고사항: 해당 없음**

## **10. 관련부서: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**

##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자치행정과
입안자	부서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과장 정 주 연
	팀장 직위·성명	총무팀장 김 효 진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이 나 연 (031-790-5183)

[별표 1]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지급기준(제20조 관련)

구 분	지급기준
<p>하남시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 참여 자원봉사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봉사기간: 1일 4시간 이상</li> <li>• 교통비: 3,000원 이내</li> <li>• 급식비: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별표2의2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이내</li> <li>• 활동용품비: 실비</li> </ul>